

## < 변경 대비 표 >

1. 변경 대상 투자신탁 : 키움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3호[국공채]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8.03.16.
3. 주요 변경 사항 :
  - 신탁업자보수율 인하
  - Class C-I 추가

### [규약]

항 목	변 경 전	변 경 후
제3조(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)	①~② (생략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2.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①~② (현행과 동일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2. (현행과 동일) 3. Class C-I 수익증권: <u>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</u>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 ~2.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 ~2. (현행과 동일) 3. <u>Class C-I 수익증권</u>
제39조(투자신탁 보수)	①~② (생략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Class C1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45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1.75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2</u>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 2. Class C-e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45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85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2</u>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 <u>&lt;신설&gt;</u>	①~② (현행과 동일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Class C1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45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1.75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15</u>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 2. Class C-e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45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85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15</u>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 3. <u>Class C-I 수익증권</u>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45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4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15</u>

		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**[일괄신고서, 투자설명서]**

항 목	변 경 전	변 경 후
제1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2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1. 매입, 환매, 전환기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* <u>신탁업자보수율: 연 0.02%</u>  <신설>	* <u>신탁업자보수율: 연 0.015%</u>  <u>Class C-I 수익증권</u> * <u>가입자격: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</u> * <u>선취판매수수료: 해당사항 없음</u> * <u>환매수수료: 해당사항 없음</u> * <u>투자신탁보수:</u> 가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045%</u> 나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04%</u> 다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15%</u> 라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%</u>

**[간이투자설명서]**

항 목	변 경 전	변 경 후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 <u>신탁업자보수율: 연 0.02%</u>  ※ 주석사항 <신설>  주1) ~ 주3) (생략)	* <u>신탁업자보수율: 연 0.015%</u>  ※ 주석사항 <u>주1) 생략된 종류(C-I)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참조</u> 주2) ~ 주4) (현행과 동일)